

충주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2012. 10. 26(금)

기타안건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440	(1)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1441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총 무 위 원 회

기타안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2012.10.08	2012.10.08	2012.10.19	2012.10.19	총무과장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2012.10.08	2012.10.08	2012.10.19	2012.10.19	회계과장

2. 제안설명요지

(1)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1) 제안이유

-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협의회는 아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
 - ▶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경상북도 문경시(안 제3조)
- 산업 · 문화 · 관광 · 교통 등 분야별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안 제4조)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충주시장, 여주군수, 원주시장,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 문경시장 순의 윤번제로 하되 최초 의장은 충주시장이 한다.(안 제5조와 제6조)
-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안 제12조)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1)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교환

교환배경

-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주덕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공공체육시설확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인 충청북도와 협의하였으나 도정 방침이 매각이 아닌 교환 요구에 따라 시유지와 교환하고자 함.

교환대상 재산현황

소유자	충청북도	충주시
위치	주덕읍 삼청리 218-8외 5필지	수안보면 안보리 산 50
적	11,792m ²	195,315m ²
교환요청면적	11,792m ²	195,315m ²
기준가격	268,621,760원 (22,780원/m ²)	185,158,620원 (948원/m ²)
감정예상가	509,820,000원	468,756,000원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감정차액	41,064,000원(교환차액 충청북도에 지급)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3항
 -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한다.

□ 교환의 필요성

- 주덕읍은 인근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충주에서 유일한 읍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 다목적운동장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와 시유림을 교환하여 지역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체육진흥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양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변경

□ 사업개요

- 위 치 : 충주시 양성면 용대리 207-1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20,000m², 건물 100m²(지상 1층)
 - 축구장, 테니스장, 관리동 등
- 사 업 비 : 2,800백만원(국비 600, 도비 700, 시비 1,500)
 - 토지매입비 : 800백만원
 - 체육공원 조성
 - 축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진입도로 등 : 1,830백만원
 - 관리동 신축 : 1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 사업의 필요성

- 소외지역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민 건강 증진과 체육 균형발전에 기여

3) 제2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 사업개요

- 위치 :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479-69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3,784m² (국유지 3,142m², 시유지 642m²)
 - 건물 990m² (농기계보관창고 660m² / 지상1층, 비가림시설 330m²)
- 사업비 : 693백만원
 - 토지매입비 : 103백만원
 - 건물신축비 : 543백만원
 - 농기계보관창고 443백만원, 비가림시설 100백만원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 47백만원
- ※ 기타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 등 별도 : 557백만원 (32종/98대)
- 사업기간 : 2012년 ~ 2013년

□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일손 부족을 덜어주고
- 원거리 남부지역(주덕, 대소원, 신니, 노은, 가금)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 본 건은 중부내륙권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의회는 충주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괴산군·음성군·단양군, 경상북도 문경시로 7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 산업·문화·관광·교통 등 분야별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규약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상호 보완하여 제정한 규약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1) 주덕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교환

- 본 건은 주덕읍 삼청리 218-8번지 일원($16,110m^2$)에 다목적운동장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2012년 4월 제16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인 충청북도가 매각을 원하지 않고 토지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부지 내 도유지를 시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교환하고자 하는 도유지는 사업부지 내 토지로 주덕읍 삼청리 220-1번지외 5필지($11.792m^2$)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시유지는 수안보면 안보리 산 50번지로 면적이 $195,315m^2$ 로 지목은 임야로 주위가 산으로 되어 있어 자연 산림 조성 외의 타 용도로는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검토결과 본 교환건은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충청북도의 교환 요구에 의해 도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양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변경

- 본 사업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위해 양성면 용대리 산 39-3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164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비와 사업비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토지매입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소유자인 종중토지의 보상비 과다한 요구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여 사업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부지면적은 당초 $32,702m^2$ 에서 $12,702m^2$ 가 줄어든 $20,000m^2$ 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증가로 당초 25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28억원으로 변경되었음.
- 새로 변경하는 부지는 양성면 용대리 207-10번지 일원으로 지역주민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지목이 담으로 되어 있으며 면 소재지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이용하는 데 편리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나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부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향후 동일한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면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토지보상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제2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 본 건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원거리에 있는 남부지역(주덕, 대소원, 신니, 노은, 가금)농업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추가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농기계임대사업은 국고보고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으로 신설(최초·추가)사업에 한해 사업단가 10억의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부지매입비와 비가림시설은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임.
-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479-69번지 일원으로 하천에 인접해 있어 부지 내 성토작업과 옹벽설치가 필요하며 진입로가 협소하여 추후 농기계와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진입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임.
- 본 제2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남부농업인의 이용편의를 제고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 답변 요지

(1)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 질의 : 행정협의회에 가입한 시·군은 협의를 모두 거쳤는가?

○ 답변 : 실무협의는 끝났고 지금 의회 의결을 받은 곳은 세 곳이며 세 곳은 추진 중에 있음.

▶ 질의 : 행정협의회에 제천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답변 : 당초 실무협의회 처음 구성시에는 참여를 했는데 기존에 운영중인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 명칭과 기능이 유사하여 다른 시·군으로부터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 불참의사를 표명했음.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 질의 : 수안보면 안보리 산50번지의 위치는?

○ 답변 : 미륵리로 가는 우측편으로 사문리 도유림하고 연접된 지역임.

▶ 질의 : 제2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한 민원은 없는가?

○ 답변 : 없음.

5. 심사결과

(1)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 원안가결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 원안가결